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4 선고 2018가단5588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연합회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2019. 1. 17.

판결 선고2019. 2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,514,7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. 9. 12.부터 1998. 6. 3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03. 5. 31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가. 피고 C에 대한 청구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D에 대한 청구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정완

별지